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777
----------	-----

제출년월일 : 2001. 2. 25
제 출 자 : 광 양



1.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출입차량의 기준을 정하고,
- 불법폐기물의 반입통제, 생활폐기물의 반입처리수수료의 부과절차 등을 정하여 시민의 편의 및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매립장 반입이 허용되는 것을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제한
- 매립장 출입허용차량 : 위탁·대행업체 및 소량 반입 개인차량
- 불법폐기물의 반입자에 대한 조치 : 반출명령(계고서 발부)하고, 미이행시 행정대집행하고 소요비용 징수
- 생활폐기물 반입의 일시적 제한 : 천재지변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 광양시폐기물관리 및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함

3. 재정조례안 : 별 첨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조의2, 제46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광양시폐기물관리 및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조, 제23조, 제27조

5. 관련부서 의견 : 없 음

6. 예산상황 : 해당사항 없음

7. 입법예고 : 2000. 11. 8 ~ 11. 28(20일간), 의견없음.

8. 사전협의내용

- 2001. 1. 17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반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출입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폐기물의 반입통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광양시 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와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 “폐기물관리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반입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임 무) ①광양시위생처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립장내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별로 직원을 통괄 지도하고, 관련 실과와 면밀한 협조로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출입) 소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반입 허용) ①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한다.

②소장은 시 폐기물수거 시책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출입허용차량) ①매립장 출입이 상시 허용되는 차량은 광양시사무의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의 소속 차량과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업체 차량으로 광양시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허용차량 이외에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차량과 소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복토재 반입, 매립장 조성공사, 재활용 반출, 공무수행 등의 차량도 매립장 출입을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소장은 출입이 허용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계량증명서 교부) ①소장은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폐기물 반입내역을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계량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최종처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생활폐기물 계량일지와 계량증명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사유 등을 시보 등에 게시·공고하고, 제6조제1항의 상시 운행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소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 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토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반입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반입수수료 부과 징수) 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 부과하여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 감면) 광양시장은 매립장 관리운영 및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 및 환경관련단체에서 자연환경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2. 시에서 직접 수거한 쓰레기
3. 기타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13조(수수료 납입통지 및 징수방법) ① 소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월 폐기물처리량을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한 후 반입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

③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와 폐기물반입 및 처리 등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광양시세부과징수규칙, 광양시재무회계규칙, 폐기물관리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대집행) ① 소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10조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계량증명서(보관용)

일련번호	
종 별	불연성, 가연성
반 입 처	
차량번호	
총 중 량	Kg (회)
공차중량	Kg
실 중 량	Kg

상기와 같이 광양시위생처리사업소에
생활폐기물 반입을 확인함.

년 월 일

광양시위생처리사업소장

계량증명서(고객용)

일련번호	
종 별	불연성, 가연성
반 입 처	
차량번호	
총 중 량	Kg (회)
공차중량	Kg
실 중 량	Kg

상기와 같이 광양시위생처리사업소에
생활폐기물 반입을 확인함.

년 월 일

광양시위생처리사업소장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계량일지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관리담당	소장	결 재

I. 생활폐기물 현황 (단위:kg)

구 분	계	반 입 량		반 출 량	비 고
		불연성	가연성		
합 계					
금 일 계					
전 일 누 계					

II. 재활용품 반출현황

반 출 내 역				비 고
업 체 명	차 량 번 호	재활용품 종류	중 량	
계				

III. 생활폐기물 반입현황

합 계	반 입 현 황								비 고	
	업체명									()내는 비규격
	반입량	()	()	()	()	()	()	()	()	

1. 위탁업체 및 대행업체 반입내역

일련 번호	소 속	차량번호 (공차중량)	총중량	1회	2회	3회	4회	5회	비고
		()							

2. 일반(개인)차량 반입내역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종 류	총중량	공차량	실중량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반 출 계 고 서

폐 기 물 반 입 자			
주 소			
소속(회사명)	(회사대표 :)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하(사)께서(에서) 반입한 아래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로서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명하니,

이 계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시간내에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케하고 그 비용을 귀하(사)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하는 바입니다.

반 출 대 상 폐 기 물

반입일시	반입지역	운반차량	폐기물종류	반 입 량	반입금지사유
				kg	

발행일시: 년 월 일 시 분

광 양 시 위 생 처 리 사 업 소 장

귀하

광양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

- 광양시 도시기본계획('99. 7. 27 건교부 승인)에서 제시된 도시의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등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보건·후생·문화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므로써,
- 공공질서의 보장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용도지역 변경 반영
 - 진상역앞 일원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 되었으나, 금번 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므로,
 -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등을 위하여 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여야 함.
 - 취락지구 반영
 - 녹지지역내에 입지한 자연발생 취락마을 봉강면 명암의 39개마을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나,
 - 광양읍 억만마을이 취락지구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락지구로 반영이 필요함.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존치
 - 마동 유원지내에 입지한 일부 지역(37,010㎡)을 유원지에서 제척 하여 취락지구로 반영하였으나,
 -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유원지의 면적을 축소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기 결정된 유원지 면적(311,010㎡)대로 존치 하는 것이 필요함.